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59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3월 22일
발 의 자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고병국, 권영희, 김소양,
김중무, 김화숙, 이광호,
이병도, 임종국, 최 선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경우 작년 1조 1천억원 적자(가결산), 올해 1조 6천억원(추정)이 넘는 운영자금 부족 문제, 단기차입에 의한 운영자금으로 성과급 지급 등 계속된 차입경영과 누적된 운영적자로 인한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대책 시행이 필요함.
- 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 개선 요구를 명시하여 공사의 적극적인 자구대책 마련 시행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영 개선 요구의 요건을 신설함(안 제32조제2항).
- 나. 사장의 이행책무와 시장의 권한을 명시함(안 제3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와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5.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6.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7.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와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u> 2. <u>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u> 3. <u>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u> 5. <u>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u>

<신 설>

6.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7.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단,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